

2020년 4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 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사무관 박유천(2522) / 제공일 : 4월 6일(총 1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
-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·의무 게시
-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
-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
-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,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,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.

○ 이에 따라,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.

## ①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

- (개정안) 수의사는 수술,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,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  -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, ② 수술 필요성·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, ④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,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였다.
- (기대효과)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 ②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·의무 게시

- (개정안)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기대효과)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,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.

## ③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

- (개정안)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, 누리집(홈페이지)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.

- (기대효과)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.

#### ④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

- (개정안) 농식품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·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,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- (기대효과)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.

####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

- (개정안)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,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·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.
- (기대효과)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(안)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- 「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<http://www.mafra.go.kr>),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## 1. 수의사법 개정 배경은 ?

□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,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확대

\* 반려동물가구: ('10) 17.4% → ('15) 21.8 → ('17) 28.1 / 동물병원: ('14) 3,979개소 → ('16) 4,173 → ('18) 4,524

□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, 과잉 진료 등 소비자 불만 증가

○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병원 -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큼

\* 소비자 불만: 진료비 미고지(15%), 과잉진료(14%), 진료비 과다(12%) (한국소비자연맹, '19)

○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시 사전 동의나 진료비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과잉 진료 우려

□ 개별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, 진료행위 등이 서로 다르고 진료비 구성 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판단하기 곤란

\* (명칭) '광견병', '공수병' / \* (비용) 중성화수술비(단일) vs 검사비+미취비+수술비(세분)

## 《 주요 개정 내용 》

-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
-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·의무 게시
-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
-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
-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

## 2. 진료비 사전 고지 방법 및 고지해야 할 동물 병원은?

-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항목 및 표준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 안내책자, 인쇄물, 벽보 및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
  - \* 의료기관 사례 : 책자 등의 형태로 비치하고, 병원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게시
- 비용의 표시 방법은 진료항목별로 단일비용 또는 범위를 정하여 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
- (적용 동물병원) 병원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임
  - (공포후 1년) : 2명 이상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
  - (공포후 2년) : 1명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
  - \* 수의사 2인 이상 진료 동물병원(1,140개소, 25%), 1인 진료 동물병원(3,429개소, 75%)

### 3. 동물진료 표준화 추진 계획은?

□ (추진계획) 다빈도 진료항목,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항목, 병원별 진료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항목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표준진료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

\* 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진료용어, 진료 절차 등에 대한 기준 필요

○ (표준화대상)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어, 진료행위, 진료항목별 절차\* 등

\* 검사·마취·처치·후처리 등 각 항목별 세부과정과 기본적인 내용

○ (절차) 동물병원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진료항목,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하고,

- 선정된 진료항목에 대해 연구조사를 통해 표준화안을 만들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안 확정 및 고시

#### ※ (사례)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의 표준화 추진 상황

- (선정대상) '13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민관심 항목 중 다빈도 항목, 고비용 항목 등을 선정, '15년부터 표준화 도입
- (누계) '15년 52항목 → '17년 107 → '18년 207 → '19년 340
- (공개대상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

#### 4. 동물진료 표준화와 표준수가제와 차이점은 ?

- 동물진료 표준화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질병명, 진료행위의 내용·절차에 대해 표준을 정하고, 각 항목별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정함에 따라 해당 항목 진료비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반면,
  - 표준수가제는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한 진료비용 또는 진료비용의 범위(상한, 하한)를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산출·결정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진료비는 모든 동물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됨
- ※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는 '99년 공정위의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되어 현재는 동물병원별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음

#### < 진료 표준화와 표준수가제 비교 >

	진료 표준화	표준 수가제
표준화 내용	질병명, 진료행위, 절차 등	적정 진료비 또는 진료비 범위
진료비 결정권자	개별 동물병원	정부 (전문기관)
진료비	개별병원마다 상이	· 모든 동물병원이 동일 * 범위를 지정할 경우 다를 수 있음
사 례	· 의료분야 비급여 항목	· 의료분야 급여 항목

\* (공정위 의견)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매우 신중 필요

현 행	개 정 안 ('20.3)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3조의2(진료행위에 관한 설명)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수술등”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동물 소유자 등”)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,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하여 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</li> <li>2. 수술등의 필요성, 방법 및 내용</li> <li>3.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</li> <li>4. 수술등 전후 동물의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</li> <li>5. 예상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③ 동물 소유자등은 수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</p>

현 행	개정안('20.3)
	<p><u>변경 사유와 내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설명, 동의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7조의6(동물 소유자등의 권리·의무 게시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와 의무 등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방법, 게시 장소 등 <u>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20조의2(발급수수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동물 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·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0조의2(발급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<u>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고지·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0조의3(진료비용 등의 고지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마련된 <u>표준진료항목, 예방접종 등의 진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의 항목,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·분석하여</u></p>

현행	개정안('20.3)
	<p>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·분석 및 결과 공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물병원,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·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
	<p>제20조의5(진료항목 등의 표준화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,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29조(경비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</p>	<p>제29조(경비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, <u>공중위생 및 동물진료 체계 발전</u>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</p>

현 행	개 정 안 ('20.3)
<p>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<u>운영, 조사·연구</u>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
<p>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(생 략)     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, <u>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, 제20조의4제2항</u>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p>
<p>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        1. ~ 6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2의2. 제14조(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         3~ 6의2.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6의3.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7.~9. (생 략)</p>	<p>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.          1. ~ 6. (현행과 같음)  <u>2의2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</u>   <u>2의3. (현행 제2의2호와 같음)</u>           3.~6의2. (현행과 같음)  <u>6의3.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   <u>6의4. (현행 제6의3호와 같음)</u>           7.~9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 ('20.3)
<p>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 1. 2명 이상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: 공포 후 1년 2. 1명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: 공포 후 2년 ③ 제2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